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 7. 11 선고 2022가단20409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단체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3. 5. 16.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어선에 관하여 2021. 4. 13.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어선에 관하여 전남 완도군청 보관 어선원부상 피고 명의로 마친 2021. 4. 28.자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과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체결일	보증기간	보증액	대출금액
2012. 5. 22.	대출일로부터 3년	136,000,000원	160,000,000원
2019. 5. 14.	대출일로부터 2년	27,000,000원	30,000,000원
2020. 12. 17.	대출일로부터 2년	45,000,000원	50,000,000원
2020. 12. 17.	대출일로부터 2년	85,000,000원	100,000,000원

나. D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2021. 9. 2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1. 25.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은행에 D의 대출금 채무 합계 296,256,765원(=138,635,803원+27,046,476원+45,193,782원+85,380,70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D은 2021. 4. 13.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어선(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4. 2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이라 한다)을 마쳤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은 이 사건 어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자동차,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자동차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반면에 E은행에 대한 대출금 합계 3억 4,000만 원, F은행에 대한 대출금 5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9, 15, 18,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어선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남편 C와 함께 전복 가두리양식을 하고 있고, 크레인을 장착할 수 있는 배가 필요한 상황에서 D이 이 사건 어선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어선원부를 통해 이 사건 어선에 가압류 등 제한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하였다. 피고는 D의 재정 상황이나 이 사건 어선을 처분하려는 경위를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어선을 인도받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5다10760 판결 등 참조).

보증인 등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써 인하여 그 채권이 변제자의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변제자는 이전받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제가 사해행위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은행에 대출금 채권을 대위변제함으로써 D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E은행의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민법 제481조의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변제자인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이로써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어선을 양도한 2021. 4. 13. 이전에 성립되어 있던 위 대출금 채권은 원고가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어선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한편 수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D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친분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어선을 매수하기 위해 매매대금 중 1,4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③ 피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이 일반적인 거래가격에 비하여 특별히 저렴하게 정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전복 양식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 사건 어선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어선의 어선원부상 가압류 등 별다른 제한이 없었고, 피고가 D의 경제상황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D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준

별지

목 록

어선번호:

어선의 종류: 동력선

어선의 명칭:

선 적 항: 완도군

선체 재질: FRP

총 톤 수: 4.40

진수 연월일 2005. 6. 21.

기관의 종류와 마력 및 대수: 가솔린 선외기 기관 250마력 1대

추진기의 종류와 수: 나선 일체식 추진기 1기, 끝,

